

울산지방법원 2021. 3. 12 선고 2020가단10424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호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법조

담당변호사 전은수

변론 종결 2021. 1. 29

판결 선고 2021. 3. 12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중구 C 임야 991㎡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2018. 6. 26. 접수 제911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와 피고는 재혼을 전제로 동거하다가 2018. 6. 말경 헤어진 사이이다.

나. 원고와 피고는 동거 중이던 2017. 12. 15.경 울산 중구 C 임야 991㎡ 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를 매수하여 2017. 12. 22. 각 2분의 1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.

다.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. 6. 26. 접수 제91124호로 2018. 6. 25.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지분 전부 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지분 이전등기'라 한다)가 피고 앞으로 마쳐졌다,

라.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 신청업무는 법무사 D이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여 진행한것이다.

당시 법무사 D의 직원은 2018. 6. 25.경 피고로부터 원고 본인이 2018. 6. 22.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와 원고의 인감도장을 모두 전달받아,원 고와 피고가 법무사 D에게 위 등기 신청을 위임한다는 '위임장'(갑 제2호증의 2, 이하 '이 사건 위임장'이라 한다)과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 용의 '증여계약서'와 갑 제2호증의 4, 이하 '이 사건 계약서'라 한다)를 각 작성하여 원고 와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.

마. 1) 원고는, 피고와 법무사 D의 직원을 이 사건 임위장 및 계약서 위조와 이 사 건 지분이전등기 관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고소하고,피고를 "피고가 원고에게 '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 지분 증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면 지분만큼의 비용을 지 불하겠다'고 거짓말하여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것"이라는 내용의 사기죄로 고 소하였다.

2)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. 11. 30. 원고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 심가는 상황에서 원고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와 법무사 D의 직 원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, 2, 5호증, 을 제5, 7, 13호증의 각 기재,변론 전 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

가. 당사자의 주장 요지

1) 원고

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 없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의로 법무사 D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업무 를 위임하였고,법무사 D은 원고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 의 의사에 반하는 이 사건 위임장과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가 마치 지도록 하였다,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는 위조된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) 피고

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 피고가 매수한 것인데 다만 편의상 그 중 2분의 1지분에 관한 소유 명의를 원고 앞으로 마쳐 두었던 것이다.

이에 원고가 2018년 6월경 피고와 의 동거생활을 청산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 지분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.

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해 주기 위하여 2018. 6. 22.

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두었던 것이고, 피고는 2018. 6. 25.경 이를 법무사 D의 직원에게 전해 주어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.

따라서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유효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판단

1)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 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고,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 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 의 성립,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,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 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,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

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(대법원 2002. 2. 5. 선고 2001다72029판결 등 참조).

2)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이 사건 위임장 및 계약서에 찍힌 원고의 인영이 원 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날인행위가 원고 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.

다만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법무사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, 이 사건 위임장과 계약서 작성 당시 법무사 D 내지 그 직원이 원고에게 직접 대리권 수여 여부에 대하여 확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의 인감도장 날인행위를 법무사 D의 직원이 한 것으로는 보인다.

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는 개인적으로 필요하여 발급받아 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피고가 몰래 가지고 가서 이 사건 위임장과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2020. 10. 29.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동거생활을 청산하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4,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보관 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몰래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가 이 사건 위임장과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하여 그 주장이 일관되지 못한 점, 원고 스스로도 원고와 피고가 2018년 6월경 동거관계를 청산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등기하기로 하여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은 인정하고 있는 점, 원고가 피고와의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지 1년 8개월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, 원고가 피고를 사문서위조죄 등 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위임장과 계약서의 원고의 인영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날인되었다는 추 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.

3)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강경숙